

등록번호	전산정보과-1340
등록일자	2016.2.1.
결재일자	2016.2.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U-안전관리팀장	전산정보과장	주민자치국장
이영신	김순례	박재근	02/01 김종두
협 조			

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2016년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



서대문구
전산정보과

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2016년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, 개인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·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-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51조(행자부 고시 제2011-45호, 2011. 9. 30.)
-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행자부, 2015. 1. 12.)

II 추진방향

-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보안 조치 수립
 - 물리적 측면 : 통합관제센터 출입 및 시스템 접근제한 통제
 - 기술적 측면 : 마스킹솔루션을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엄격한 반출입 관리
 - 관리적 측면 : 통합관제센터 내 근무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

III 추진계획

- 물리적 보안 조치
 - 관제센터 내 출입인가자 지문 등록 및 방문자 확인 후 출입 허용
 - 방문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한 출입자명부 비치 및 관리
 - 관제센터 내 모든 PC 본체를 모니터와 분리 및 잠금장치 설정으로 외부 저장장치(USB 등) 사용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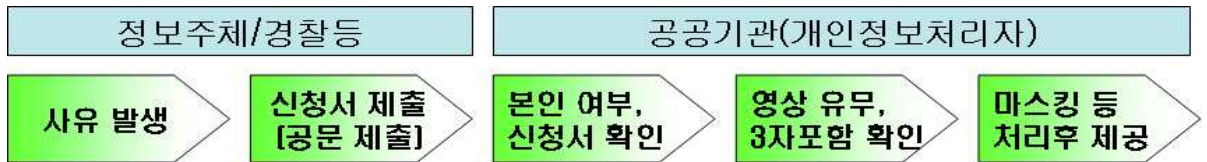
- 영상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급 및 업무특성에 따라 차등부여
 - 모니터링 요원은 열람 권한만 부여(조회, 복제 권한 없음)

□ 기술적 보안 조치

- 영상자료 반출입 담당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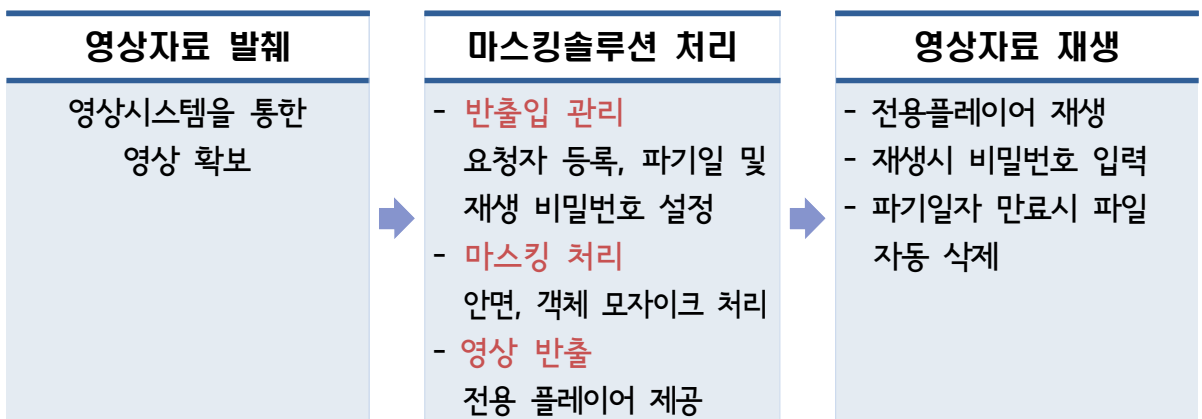
구 분	담 당 자	비 고
방법, 공원방법, 스크존	서대문경찰서(상주 경찰)	협약서에 근거
주정차, 재난감시, 자전거보관소	서대문구청(전산정보과)	

- 영상자료 반출입 절차



- 신청 :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정보공개청구 또는 공문으로 접수
- 접수 : 본인 여부, 공문 내용 확인 후 적합한지 판단
- 검토 :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
- 제공 : 파일 열람/복제 등 제공(필요시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)
- 파기 :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

- 영상자료 반출시 마스킹솔루션^{주)}을 통한 보안 강화



주) 마스킹솔루션 : CCTV 영상을 반출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대상을 마스킹(모자이크) 처리하고 처리된 영상을 암호화하여 전용플레이어에서 재생되게 하는 프로그램

○ 영상자료 반출 관리

- 반출 관련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입
- 마스킹솔루션 처리 시 파기일이 경과(14일 이후로 설정)하면 파일이 자동 삭제되므로 파기공문 불필요
- 그 외(법원 제출 등) 파기일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파기공문 받음

□ 관리적 보안 조치

○ 관제센터 내 근무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관리·감독 강화

- 교육기간 : 2016. 1월 ~ 12월
- 교육횟수 : 월1회 (1시간 정도)
- 교육대상 : 모니터링 요원, 주정차단속 요원, 유지관리 직원 등
- 교육장소 : 통합관제센터 회의실(본관 6층)
- 교육내용
 -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
 -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, 보호 업무의 절차 및 책임
 - 개인정보 취급 관련 주의사항 및 관련 정책, 지침 등의 안내

IV 기대효과

□ 반출입 업무를 경찰서와 연계 및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무분별한 열람 청구 감소

□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 고취

□ 마스킹솔루션을 통한 반출입 관리 용이 및 보안 강화

- 파일 자동파기, DB자료 분석 가능
- 반출시 전용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감소

- 붙임 1. U-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명부 1부.
2.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. 끝.